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급여종류	<input type="checkbox"/> 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연금	<input type="checkbox"/> 조기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유족연금	<input type="checkbox"/> 특례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반환일시금	<input type="checkbox"/> 분할연금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시금
------	--	--	---	---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수급권자 내용변경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사유발생일 (YYYY.MM.DD)	변경 내용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내용변경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 주소가 변경된 경우>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제출서류 없음 <부양가족연금액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사유로 인하여 일정 범위의 친족인 대리인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 임의위임장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 주소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변경항목”란은 “수급권자”란의 항목 중 변경되는 항목(예: 성명, 주소)을 기재하십시오.
 4.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은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5. “변경일자”란은 변경된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6.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하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